

[] 연료
자동차 []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
[] 촉매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 사유			
변경일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술능력		
	시설		
	검사장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